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1일 02시 22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이행강제금 부과	3

이행강제금 부과

2014.04.17 조회수 597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54
담당부서	건축과
상위법령	건축법 제80조
조례	여수시 건축 조례 39조
유형	2호 - 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
등록사유	주택건축도로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1999-10-23
규제시행/폐지일	1999-10-23
규제내용	제39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 ①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. 1.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.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.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.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53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57

Yeosu Web Contents

